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영 제4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판단하여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가"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조사"라 함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본점검업무에 추가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제6조의 각호의 1과 같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영 제46조의4제1항제2호(정기안전점검) 및 제4호(초기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의 산출은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② 영 제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6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초기점검) 대가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기 위한 추가조사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영 제4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고서의 작성비용은 별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요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의 안전점검 대가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1과 같으며 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추가조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는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어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어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7. 강재 비파괴시험 : UT, RT
8. 구조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9.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상부구조 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10.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1. 구조·지반·수리해석

별표 1.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구분		요율(%)
교 량		(연장)	50m	0.96~1.30
			100m	0.58~0.79
			300m	0.25~0.34
			500m	0.17~0.23
			1,000m	0.10~0.14
			2,000m	0.07~0.10
터 널		(연장)	300m	0.34~0.46
			500m	0.25~0.33
			1,000m	0.15~0.19
			2,000m	0.09~0.13
			4,000m	0.07~0.10
댐		-		0.14~0.20
하 천	수 문	-		3.50~5.50
	제 방	(연장)	1,000m	0.51~0.69
			2,000m	0.27~0.37
			4,000m	0.15~0.20
하구둑		-		0.14~0.20
상하수도	취수시설, 취수가압펌프장	-		0.29~0.39
	정수장, 하수처리장	-		0.05~0.07
	상수도관로	-		0.07~0.09
항 만	계류시설	-		0.11~0.15
	외곽시설(방파제, 갑문, 호안)	-		0.15~0.20
건축물		(연면적)	5,000㎡	0.44~0.59
			10,000㎡	0.28~0.38
			30,000㎡	0.13~0.17
			50,000㎡	0.11~0.15
			100,000㎡	0.09~0.12
폐기물 매립시설		-		0.94~1.27

※ 1. 대가 요율은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대가 요율은 공사기간 중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및 초기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조사 비용은 필요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2.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특별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적용)
14.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구조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체 및 복구
15.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건축물 제외)
16. 계측 및 측량 : 구조물의 상태 및 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측·측량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토압측정, 변위측량 등
17. 기타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KSEA

2 레미콘 품질관리지침

제정 2001. 6월 16일 건관 58824-449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001년 6월 16일(건관 58824-449) 제정된 「레미콘 품질관리 지침」 중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필요한 것을 발췌하였다.

제4조(현장 반입 후 품질관리업무)

① 감리원과 시공자는 현장반입 시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7일 강도 시험도 실시)
5.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 구조물별 150m3마다 1회 시험
6. 일일 현장 배합표

② 감리원과 시공자는 납품서 관리 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레미콘 출하시각, 도착시각, 규격 등 차량번호와 납품서(송장)와의 동일여부
2. 인수자
3. 감리업무수행지침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작성 여부(구조물별 집계)
4. 납품서 보관에 있어 회사별, 규격별 집계, 자재 수불대장 기록, 감리단 확인 및 생산 기록지(SUPER-PRINT) 등 제출 여부

제5조(불량레미콘의 처리)

① 감리원과 시공자는 제2항의 경우와 같은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불량레미콘 폐기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매월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불량레미콘의 유형

1. Slump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 함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KSF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기타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

(2001. 7. 30 공포)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001년 7월 30일 공포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중개정령」 중에서
우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필요한 것을 발췌하였다.

■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제54조 제1항관련)

종류	감 리 원	자 본 금	장 비
종합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5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5억원 이상	· 자동염분측정기 · 콘크리트테스트햄머 · 철근탐지기 · 도막두께측정기 · 소음측정기 · 목재함수율측정기 · 타일인발시험기
토목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회사 장비기준중 소음측정기 · 목재함수율측정기 · 타일인발시험기를 제외한다.
건축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3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인 이상 ·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1.5억원 이상	·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비감리 전문회사	1. 수석감리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인 이상 ·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 이상	1억원 이상	· 풍압풍속계 · 초음파유량계 · 회전속도계 · 진동측정계 · 소음측정기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제도 변경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시행일	비고
◎ 당초(건설기술자, 감리원 교육통합) · 최초교육 : 3년 이내 : 기본+전문교육 ◎ 변경(건설기술자, 감리원 교육분리 · 감리원교육 : 최초 감리업무 수행시 : 기본+전문교육 · 추가교육신설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등급조정시 기술등급에 맞는 전문교육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강화	2002. 1. 1	개정

■ 감리의업무 범위

구 분	업 무 범 위	비 고
설계 감리	1. 건설공사의 관련법령?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의 작성	
건설 사업 관리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	

구 분	업 무 범 위	비 고
책임 감리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시공 감리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8.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10.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1.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 분	업 무 범 위	비 고
검측 감리	1.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그밖에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손해배상 제도 변경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시행일	비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제도 변경 손해배상보증제도→손해배상보험제도 · 설계 등 용역업자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용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가입금액 : 해당 용역 계약금액 · 건설 사업관리자 및 감리전문회사 – 설계 등 용역업자와 유사하게 정함 ·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	 용역사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	2002. 1. 1	개정